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함진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0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2. 27.

발의자 : 함진규 · 박덕흠 · 윤한홍
박맹우 · 김재원 · 최연혜
이장우 · 민경욱 · 이은권
강석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군립공원·시립공원·구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할 때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,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으로 군립공원·시립공원·구립공원을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게 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군립공원·시립공원·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권자는 시·도지사인데 승인 면제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시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군립공원·시립공원·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·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4제2항).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2항 단서 중 “환경부장관의”를 “시·도지사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